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2024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채용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24.1월) 참조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작성

I

편의지원 제공 대상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편의지원 제공 대상이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채용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II

편의지원 제공 신청방법

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여부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등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서류합격자 발표 후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된 제출 기간 내 필히 제출
▼	
증빙서류 확인, 편의지원 제공 검토 및 통보	○ 증빙서류 확인 및 편의지원 제공 필요 여부 검토 ○ 유선 등을 통해 편의지원 제공 내용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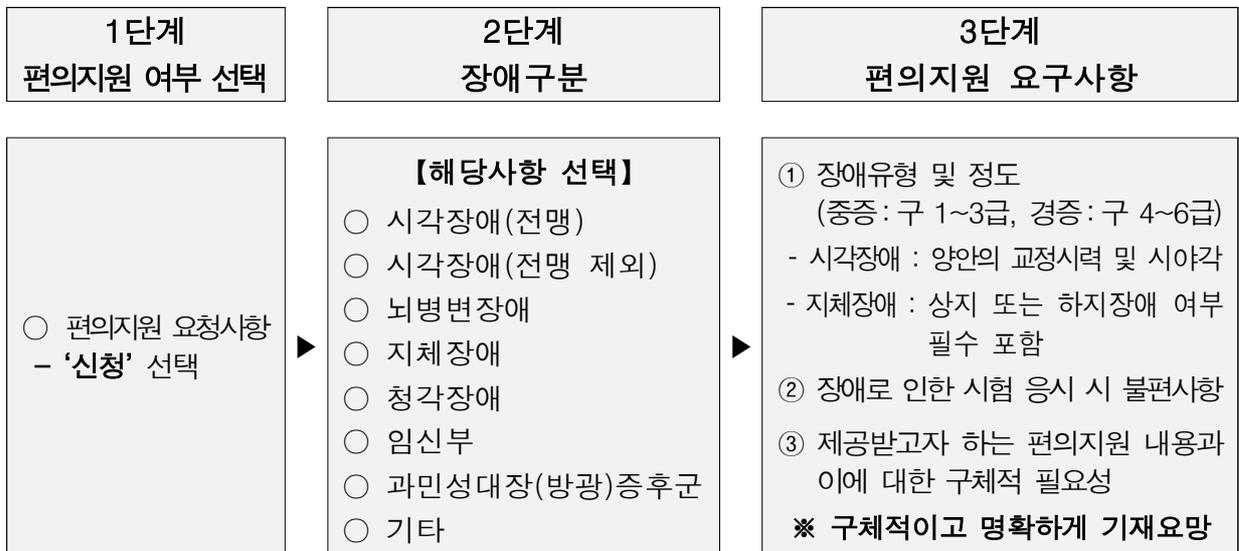
III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2. 편의지원 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 관련 사항’ 항목에서 아래 단계에 따라 해당사항을 선택 및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위 2번 ‘3단계 편의지원 요구사항’의 ① ~ ③ 항목은 의사진단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인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4.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2.8.15.~24.8.14.)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됨
- 5. 편의 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편의제공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필기시험)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하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이동 편의를 위한 시험실 저층 배치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제공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뇌병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시각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전맹인 (양안 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약시자 (양안 교정시력 0.04 초과~0.3 미만) ※ 시야각도 장애는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검토하여 편의지원 내용 결정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과민성대장 (방광)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진단서 1부

참고2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면접시험)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하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뇌병변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서식 확대 제공 ○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시각 장애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관련서식 확대 제공 가능 ○ 필요시 현장상황에 따라 도우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전맹인 (양안 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식 점자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약시자 (양안 교정시력 0.04 초과~0.3 미만) ※ 시야각도 장애는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기타 사항	특수 · 중복 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장애인증명서 1부 의사진단서 1부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1부
	과민성대장 (방광) 증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1부

참고3

의사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후 해당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의사 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

2.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2.8.15.~24.8.14.**)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정도(중증, 경증)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 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의사진단서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참고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장애	전맹인	상기인은 좋은눈의 시력이 0.07이며,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과 답안 작성이 불가능한 자로서, 점자문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약시자	상기인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좋은 눈의 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정상적 문제 판독이나 OMR과 같은 정교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답안작성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지체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양쪽 상지의 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이 각각 완전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이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답안작성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측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되었고 손과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답안작성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정상적 문제 판독이나 OMR과 같은 정교한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및 답안작성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